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8. 4. 4.

운영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- 가. 발의일자 : 2008년 3월 25일
- 나. 발 의 자 : 김기중 의원 외 4인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28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35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8년 4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: 김 기 중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2007.5.11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조문 변경이 발생되어 기존 조례상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된 법조문 및 제목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”로 조례명 변경
- 제1조(목적)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 변경
- 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- 제6조 중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변경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(專 門 委 員 김 병 욱)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課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기중 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- 2007.5.11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조문 변경이 발생되어 기존 조례상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된 법조문 및 제목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제 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”로 조례명 변경
- 제1조(목적)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 변경
- 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- 제6조 중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 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”로 한다.
-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- 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- 제6조 중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명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	제 명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 국 조례
제1조(목적) -----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 이라 한다)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 국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	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」 -----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 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으로 정한다.	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